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5. 3. 24.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499호로 2025년 3월 10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안 제2조)
-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5.03.11.~2025.03.18.)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 “친환경 소재”의 정의는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1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정의를 참고하여 규정하였고,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된 것은 친환경 소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봄.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1](환경표지대상제품)

##### 7. 복합용도 및 기타

##### 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EL727. 바이오매스 유래 합성수지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친환경 현수막 소재**(출처: 파주시)

소 재	내 용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b>PLA(Poly Lactic Acid)원단</b>	- PLA현수막 원단은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식물성 추출물을 발효시켜 만든 유산(lactk acid)을 고분자 합성해 제작되는 소재임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티백용 필터 제작에 사용됨. PLA현수막은 소각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땅에 묻어도 1년 정도면 오염물질 배출없이 썩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음.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b>에코엔(Ecoen) 원단</b>	- 휴비스의 고내열성 생분해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엔을 기반으로 한 원단으로, 에코엔은 100% 생분해되는 바이오매스 소재와 내구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를 결합함으로써 기존 폴리에스터 섬유와 물성이 유사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재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제1항은 공공기관인 영등포구부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 하도록 함. 제2항 및 제3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권고를 통해 민간에게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검토결과**

- 환경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2024년 상반기, 지자체가 수거해 처리한 폐현수막만 2,574톤에 달하며,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그침. 해당 현수막의 제작·폐기로 최소 9,345톤<sup>1)</sup>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서울에서 연간 약 7,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함.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0㎡ 현수막 1매(1.11kg)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온실가스 4.03kg(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함.

- 한편,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제작되며, 현수막을 소각 시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및 온실가스 등을 다량 배출시키며, 매립 시에는 자연분해까지 최소 50여 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현수막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러한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지자체 및 민관협의회 대상)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23년 12월 파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비롯하여 총 63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영등포구 현수막 지정계시대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현수막 지정계시대 12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폐현수막의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또한 현수막 지정계시대에서 발생한 현수막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됨.

영등포구 현수막 지정계시대 계척 개수(3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3,368개	3,933개	4,089개

2) 강동, 금천, 노원, 성북, 중랑

## 2024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 □ 추진결과

- 추진기간: 2024. 10. ~ 12.
- 설치수량: 23개(반자동 5단형 1개, 저단형 22개)
- 설치위치: 9개동 / 12개소

	총계	영등포동	여의동	양평1동	당산1동	당산2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대림2동
연립형	1	-	-	-	-	-	-	1	-	-
저단형	22	4	3	2	5	2	2	-	2	2
계	23	4	3	2	5	2	2	1	2	2

- 소요예산: 39,150천원(행안부)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